

# 여성취업 막는 모성보호 금지

## 미 대법원 “여성 스스로 직업선택할수 있어야”

어머니로서의 여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‘모성보호정책’이 성차별적 요소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논란이 미국에서 일고 있다.

페미니스트 여성지인 ‘미즈’는 최근호에서 여성이 위험한 직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이용되는 모성보호정책을 금지한 미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전했다.

최근 대법원은 자동차 배터리업체인 존슨 콘트롤즈사가 모성보호조항에 의거,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납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여성들이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조처에 대해 남녀 평등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.

이 판결문에서는 문제가 된 특별작업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생식능력에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결국 이같은 판결은 여성들이 스스로 작업상의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연방법이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.

아이오와대학 정치학자인 셀리 케네디박사는 “이는 여성들이 보수가 높은 생산직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”면서 “아무도 여성들이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”고 지적했다.

여성들은 어떤 직업의 혜택 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.

그는 “단지 여성들만이 모성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게 납에 노출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실제로 말할 수 있을 뿐”이라 강조했다.

미국전국여성단체(NOW) 법

률담당인 엘리슨 웨더필드는 “여성들을 남성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결국 모든 근로자가 직면한 작업장의 위험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압력이 될 것”이라고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.

바드대학의 정치학자인 캐롤 내키노프는 “여성들은 자신의 직업경력과 출산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”면서 우려를 표시했다.

한편 상업회의소 소송센터의 로빈 콘래드는 “이 판결로 인해 기업은 엄격한 안전기준이 없는 나라에 그 작업을 떠 넘기거나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는 로봇을 사용하게 될 것”이라 경고했고, 카톨릭협회의회의 법률고문인 마크 초코는 “법원이 태아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실망했다”고 비난했다.